

대형트롤어선 조업구역 확장안 철회 촉구건의안

의안 번호	222
----------	-----

발의년월일 : 1993. 12. 30.

발의자 : 여석창의원외 12인

□ 제안이유

작금에 대형트롤어선의 조업구역을 위반한 불법어로 행위는 동해안 어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으며, 게다가 최근들어 수산청의 트롤어선의 조업구역 확장안은 전 동해안 어장 황폐화와 동해안 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기에 대형트롤어장 확장안을 즉시 철회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함.

□ 주 문

우리 지역은 관광수산도시로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7천여명이 되며, 수산물과 연계된 업종도 다양할 뿐만아니라, 특히 관광분야에 종사하는 지역주민의 대다수가 어민들의 어획물과 직·간접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동해바다를 농민의 문전옥답과 같이 소중한 삶의 터전으로 여겨왔으며, 생업을 영위하는 주된 방편으로 삼아 왔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어장과 유한한 수자원을 감안해 볼때, 우리 어민들은 실로 비참하리 만큼 갖은 고통속에서 생활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U·R 협상타결과 더불어 수산물의 전면 개방으로 인한 어가 하락은 어민들의 생계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속에서 부산을 사업근거지로 하는 기업성 어업인 초현대적인 대형트롤 어선들이 그들의 조업구역인 동경 128도 삼천포앞 이서쪽 해역에서 조업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연히 조업구역을 위반함은 물론 심지어 속초해역까지 침입하여 명태를 포획하는 등 우리어민의 어군을 약탈해 감으로써 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어민들의 어구를 마구잡이로 유실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선조들이 물려준 이 동해바다를 생업의 터전으로 어자원을 육성 보호하면서 풍요로운 어촌과 풍성한 자원을 간직한채 우리 후손 대대로 물려주어야 하겠기에 우리 어민들은 대형트롤 어업의 어장확장에 대하여 그동안 사활을 걸고 반대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청이 대형트롤어선의 어장을 확장시키고자 함은 전 동해안 어장을 황폐화시키는 행위이며, 동해안 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속초시민과 함께 의회가 결사 반대하므로 대형트롤어선 조업구역 확장안을 즉시 철회해 줄 것을 촉구 건의합니다.

수 산 청

우 100 - 714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541 / 전화 (02) 753 - 7995 / 전송 753 - 8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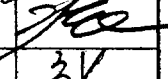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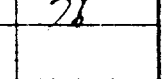
문서번호 연근 53207 - 3/

시행일자 1994. 1. 15. ()

(경 유)

수신 속초시의회의장

참조

선결	의장		지시	
접	일자	'94. 1. 18	결	부의장 
	시간	:	재	과장 
수	번호	50	공	계장 
처리과	속초시의회		람	
담당자				

제목 건의서 회신

진언위원 

1. 속의회 13131 - 2 ('93.1.7)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관련 대형트롤러선 조업구역 확장안 철회 촉구 건의서에 대하여는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덧붙임 건의서 회신 1부. 끝.

수 산 청



건의서 회신

- 대형트롤어업은 수산자원보호령제17조 관련 별표14에 의거 조업구역을 전국근해로 하고, 현행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농림수산부령1,073호)별표9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으로 근해트롤어업을 동경128도 이동에서 조업을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동규제조치는 '76.11.10 연근해어업에관한허가사무취급요령(수산청훈령제256호)개정시, 대형트롤어선의 한·일어업협정위반을 예방하기 위하여 반영되었습니다.
- 대형트롤어업의 주 어장은 동중국해에서 대마도 서방에 이르는 남해안 일원으로써 말쥐치, 갈치, 참돔, 가오리등의 어종을 주 대상으로 조업하며, 특히 말쥐치어장이 제주도과 대마도를 중심으로 일본·중국이 공동으로 조업하는 공해어장에서 주로 형성되어 일부 트롤어선이 동경128도 이동에서 계속 조업함에 따라 정부는 서일본 위반조업 방지를 위하여 지도선을 집중 배치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최근 대형트롤어선은 정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조업중 선명과 약호까지 은폐하고 있으며 특히, 동해안까지 출어 위반조업을 하는가 하면 야간과 황천시를 이용하여 일본수역을 침범·조업을 계속하고 있어 한·일 어업협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관련업계와의 분쟁발생 및 이에 따른 갈등과 반목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오고 있어 대형트롤어선의 위반조업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 이와 관련, 수산청에서는 대형트롤어선의 근본적인 위반조업을 방지하는 조치로서 대형트롤어선에 자동위치발신기를 의무적으로 장치토록 하여 조업중인 어선의 위치가 자동적으로 계속 추적될 수 있도록 하고, 선명, 약호 표시규격을 원거리에서도 식별이 가능토록 확대 조치하되, 대형트롤 금지수역 및 한·일공동규제수역 외측에 위치한 최소한의 공해수역에 대해서는 어업어건에 맞추어 조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산청 고시로 제정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바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검토안은 UN 해양법협약에 대한 비준국가가 '93.11.16 60개국에 이르게 되어 '94.11.16 발효될 것으로 전망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대비의 측면도 고려되고 있는 것입니다.
- 앞으로 관련 규칙의 개정은 업계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어업조정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대외적인 문제도 있으므로 관련부처와도 협의하여 원만히 문제해결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